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5939	김태년의원	2024.11.27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회(2025.9.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6161	박상웅의원	2024.12.03	
	2206851	이종배의원	2024.12.23	
	2206960	박덕흠의원	2024.12.26	
	2207055	이재관의원	2024.12.30	
	2209076	김동아의원	2025.03.19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9.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회(2025.9.1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 9. 10.)에서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제22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

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기술에”를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기술을”을 각각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기술이”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로, “산업기술의”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산업기술을”을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로 한다.

제22조의5제5항 중 “산업기술에”를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 아.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

	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
자.·차. (생 략)	차.·카. (현행 자목 및 차목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생 략)	제22조의3(자료의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산업기술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	제22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산업기술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산업기술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산업기술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산업기술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	1. ----------

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
2. 제1호의 산업기술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2.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이----------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산업기술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22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⑤ ----------

상대방 외에 해당 산업기술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에----------.